

##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6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5년    월    일  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및 보호·보존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조사·연구 및 자료발간, 보호·관리,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,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함
-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
- 도지사와 시장·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·보호·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음

### 3. 의안전문 : 붙임

### 4. 신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### 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## 재단법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충청북도와 인근지역 민족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·연구 및 보호·관리를 위한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법인격 및 명칭)** 법인격은 재단법인으로 하며, 명칭은 충청북도 문화재 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)** 연구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북도 관내에 둔다.

**제4조(정관)** ①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사업에 관한 사항
5. 설립자산 및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
6. 임원의 자격·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7. 이사의 의결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9. 연구원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
10.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
11. 연구원의 조직 및 규정제정에 관한 사항
12.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

②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를 경유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**제5조(사업)** 연구원은 다음 각호의 수탁사업 등을 수행한다.

1. 문화유산의 조사(지표조사, 발굴조사, 학술조사 등을 포함한다)와 연구 및 자료발간

2. 문화유산(지정문화재, 비지정문화재, 매장문화재를 포함한다)의 보호·관리
3.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및 수장전시
4.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5.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

**제6조(재산출연)**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.

1. 충청북도 및 시·군의 출연금 또는 현물
2. 출연을 원하는 기관·단체 및 기업체, 대학 등 기타 출연금

**제7조(사업계획 및 결산)** ①연구원은 매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세입·세출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입·세출예산서는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, 결산서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하여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.

**제8조(보고·검사 등)** ①도지사는 연구원에 대한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도지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**제9조(운영비 등 지원)**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0조(공유재산의 대부 등)**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
**제1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연구원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에 귀속된다.

**제12조(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)** 도지사는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자료의 열람 및 제공)**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연구원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를 열람토록 하거나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.

**제14조(사업의 위탁)** 도지사·시장·군수는 문화유산의 조사·보호·보존관리에 관련된 사업을 연구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.

**제15조(비밀 준수 의무)** 연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**제16조(다른 법령의 준용)**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익 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1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□ 문화재 보호법 [1982. 12. 31 전문개정 법률 제3644호]

**제48조의2 (매장문화재의 보호)** ①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문화재관련 전문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판정된 지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②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업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에서 제1항의 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설공사의 인·허가 등을 할 경우에는 미리 매장문화재 포장여부와 그 보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. 매장문화재 및 주변의 경관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인·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### □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4조 (설립허가기준)**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,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(이하 각 "기본재산"이라 한다)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.

## □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

**제4조 (설립허가)** ①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.

1.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
2.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,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
3.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

## □ 민 법

**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**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## □ 지방재정법

**제14조 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**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, 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.

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  2.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  3.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
  4.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